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금!!!

지난 4년간 243만 가구에 1조 9천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 가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는 60세 이상 1인 가구에도 지급해 드리고

2015년에는 수급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천 가구, 억원]

지급연도	가 구	지 급 액
합 계	2,431	19,066
2009년	591	4,537
2010년	566	4,369
2011년	522	4,020
2012년	752	6,140



ARS 신청 (1544-9944)

국세청 발송 문자서비스를 통한 휴대전화 (스마트폰, 일반폰) 신청

모바일 웹 신청 [국세청 통합 앱 (M-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제도설명
■ 신청서식
■ Q & A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www.eitc.go.kr)

전화문의 126 번 (1 번 누른 뒤 4 번)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해 드립니다.

NTS 국세청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일한만큼 쌓이는 행복 보너스

근로장려세제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13

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01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 **(총소득 요건)** 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수	총소득 기준금액
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 **(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 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 **(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 재산 : 전세금, 승용차, 예·적금·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 부동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3. 3. 1 부터 2013. 3. 31.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단, 2012년도에 생계·주거·교육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02 신청하여야 할 내용은?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서

03 신청 기간과 방법은?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 **신청방법** : ARS 신청,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ARS 신청

전화하기 1544-9944 → 본인 확인 → 신청 내용 확인 →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 등 입력 → 신청 종료



휴대전화 신청

이통3사 MMS(LMS·SMS)발송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 내용 확인 → 신청 종료



모바일 웹 신청

국세청 통합 앱설치(M-국세청) → 근로장려금 선택 → 본인 확인 → 신청 내용 확인 → 신청 종료



인터넷 신청

컴퓨터 www.eitc.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종료

04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 신청기간내(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A

Q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은?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의 크기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부양자녀수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6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만원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만원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만원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Q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 등은 2012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귀하가 알고 계신 금액과 일치할 경우 증거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총급여액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는?

-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③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④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은?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임차주택의 간주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상가는 간주전세금 적용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신청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모두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주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